

## 요 약

- ▶ PQ제도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부적격자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적격심사제도는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낙찰제도임.
- ▶ 현행 PQ제도는 최근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 2건을 수주한 총일건설의 부도 사례에서 보듯이 적격업체를 선별해내는 기능상에 문제가 있음. 적격심사제 역시 비가격 요소 평가 부문에서 변별력이 결여되어 있음.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응답자가 현행 PQ제도가 심사 기준의 변별력부재, 통과 업체수 과다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였음.
- ▶ 향후 PQ 및 적격심사 기준의 개선 논의는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 질적인 평가 요소 도입, 부적격업체 선별 기능 강화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 PQ 시공경험 평가 부문에서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 신축적으로 실적 산정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인 공사실적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과거 시공물의 평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 ▶ 현재 PQ 기술능력 평가 부문에서는 거의 모든 업체가 만점을 받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기술능력 평가 부문에서 해당 공종 경력을 가진 핵심 기술 인력만을 평가하고 이들이 수행한 동종 공사 실적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경영상태 평가 부문은 건설업체의 경영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이 투기 등급인 업체들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현금 흐름에 관한 평가 지표, 신용등급 등을 새로운 심사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기업 형태, 과거 부도 여부 등 비재무적 심사 항목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